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에서 얻은 교훈

이동익\*

### 1. 서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이 탄생하기까지 보건 복지부 등 정부 부서들을 포함하여 과학계, 시민단체, 윤리계, 종교계가 온갖 심혈을 다 기울였지만 막상 탄생된 법률 내용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단체나 정부 부서는 아무 곳도 없었던 것 같다. 과학계는 과학계대로, 윤리계는 윤리계대로, 그리고 종교계는 종교계대로 법률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여과 없이 토로했고,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몇몇 종교 단체에서는 즉각 법률 개정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하였다.

결국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사건을 거치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미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였고, 국회 상정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 법률은 출범할 때부터 수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이 법률에서 설치를 요구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법률안의 입법 예고 당시부터 줄곧 큰 저항에 부딪혔던 부분이기도 하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실천을 위하여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그 역할은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얼마만큼 충실히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 법률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안전과 윤리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견들 사이의 상호 이해와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교환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회의 구조가 되어야 함에도 이 위원회의 구성은 태생적으로 그 위원회로서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sup>1)</sup>

이 소고의 서론에서부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언급하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상 대두되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학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02-590-7840. donglee@catholic.ac.kr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부장관, 법제처장 그리고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에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학계, 연구계 또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제7조 3항 1-2).” 정부위원 7명, 과학계 위원 7명, 윤리계 위원 7명 등 2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대결 구도를 띠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10권 2호(통권 제18호) : 2007년 12월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칫 위원회의 기능이 충분한 의사소통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위원들은 자신과 관련된 부서나 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쪽두각시 역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 소고는 위원회의 운영에서 얻은 교훈에 관한 글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이 위원회의 운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구성의 문제를 먼저 언급하였다. 이 글은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그 다음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운영되었던 회의와 의결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를 통해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 1. 위원회의 구성 문제

위원회의 구성이 위원회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고 말할 수는 없다. 법률 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는 달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들은 회의 출범한지 세 달이 지나서 마련되었고,<sup>2)</sup> 여기서도 회의의 횟수를 비롯하여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서의 의결 등에 관해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위원회의 구성은 회의의 운영과 관련이 없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대통령 소속의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14명의 민간위원들과 당연직인 정부위원 7명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던 날, 사실상 위원회로서는 첫 번째 회의였던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도 바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이었다. 즉, 위원회의 1/3이나 차지하고 있는 정부 위원들 때문에<sup>3)</sup> 자칫 위원회의 운영이 정부의 주

도로 기울 염려가 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이었고, 이러한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던 것이다.<sup>4)</sup>

대통령의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될 당시부터 시민단체들이나 종교단체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였지만,<sup>5)</sup> 입법 예고안은 별도의 수정 없이 원안대로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해 정부가 고심한 흔적도 물론 찾아볼 수 있다. 2002년 10월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준비한 「생명윤리관련법안 쟁점검토」라는 보고서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각계각층의 견해를 폭넓게 소개하면서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sup>6)</sup>

“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하여야 여러 이해관계 집단의 이해를 잘 조절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프랑스나 미국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 현장에서 과학자와 과학자 아닌 사람의 비율을 가능한 한 동등하게 하도록 한 규정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당해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 의미나 효과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그 연구의 과정이나 결과가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따라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의 참가도 보

2) 2005년 7월 15일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제 1호가 마련되었다.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은 위원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부장관, 법제처장의 7인으로 명기하고 있다.

4) 제 1차 간담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촉식과 대통령과의 간담회, 2005년 4월 7일.

5)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위원회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무회의가 의결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반대하며”라는 공식적인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1/3을 정부부처의 장관으로 구성한다는 발상이 정부의 의도대로 위원회를 이끌겠다는, 일종의 기만적 발상으로 간주하기에 반대한다.(2003년 10월 17일)”

6) 국회 사무처 법제실. 생명윤리관련법안 쟁점검토. 법제현안 2002 : 2002-9(통권 제127호) : 43-52.

장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sup>7)</sup>

또한 위의 보고서가 소개하고 있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시민단체, 종교계의 입장은 본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립성, 민주성, 공개성 및 시민참여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요구인데, 위원회의 법률 구성 자체가 이미 원칙적으로 그 요구를 봉쇄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sup>8)</sup>

그러나 이 소고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운영의 문제에 국한하여 몇 가지만 언급하려고 한다. 즉, 구성의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파생되어 나타난 회의나 의결 관계 등 운영의 문제에 국한하고자 한다.

### 1) 대리참석의 문제

2005년 7월 15일, 위원회의 첫 번째 공식회의에서 다루었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 소속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을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sup>9)</sup>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은 대리출석이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변질될 것인지를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정부부처의 장관이 바쁜 업무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대리참석에 관한 운영 세칙에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개되는 대리출석의 양상은 그 좋은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아래 <표 1>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표 1>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위원은 거의 대부분이 대리참석으로 회의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며, (심지어는 대리참석도 하지 않은 정부부서도 있다) 대리참석은 회의 중 의결이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대리의 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정부위원들도 그들의 직무상 바쁜 일정 때문에 잠깐 얼굴만 내미는 정도의 회의 참석도 빈번하였으니, 회의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애당초 무리였다

<표 1> 공식회의와 위원 출석 현황

회 의	민간위원참석	정부위원참석	대리참석
2005-1차(7월15일)	12 (14)	3 (7)	4
2005-2차(10월10일)	13 (14)	3 (7)	3
2006-1차(2월 2일)	11 (12)	1 (7)	5
2006-2차(6월16일)	11 (12)	1 (7)	6
2006-3차(11월 2일)	8 (12)	1 (7)	3
2007-1차(3월23일)	11 (12)	2 (7)	4
2007-2차(11월22일)	8 (14)	1 (7)	3

\* 2006년 회의부터는 14명의 민간위원 중에 윤리계 위원으로 분류되었던 양삼승 위원장이 위원직을 사퇴하고 황우석 연구와 관련하여 황우석 연구윤리를 심의하는 동안 회의 참석이 적절치 않다고 권고된 정규원 위원이 제외됨으로써 민간위원 14명 중 2명이 유고의 상태로 회의가 계속되었다.

7) 국회 사무처 법제실, 앞의 글 : 51-52.

8) 국회 사무처 법제실, 앞의 글 : 47. 이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독립성 : 자유로운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2) 민주성 : 다양한 학문적 입장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균등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3) 공개성 :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은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민참여 :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인사가 참여해야 하며, 제도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해야 한다. 5) 독립된 사무처 설치가 필요하며, 사무처는 전속 공무원과 관계 부처에서 파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한다.

9) 21인의 위원 중 대리참석 3인을 포함한 18인이 참석하여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2005년 7월 15일 1차회의).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10권 2호(통권 제18호) : 2007년 12월

는 생각이다.

정부부처의 장관으로서 자신이 속한 모든 위원회에 충실히 참석하기는 그리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장관님도 계시다고 한다면 이 위원회의 활동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른 항목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2007년 1월 19일에 있었던 위원회 간담회에서는 회의가 잘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위원회의 운영체척에서 명기하고 있는 것처럼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다짐하였고, 한편으로는 정부위원들의 철저한 회의 참석을 촉구한 바 있다.<sup>10)</sup> 결국 회의 형태가 파행적이 된 이유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2) 위원들의 전문성 문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6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규정에 따라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중

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규정에 따라 체세포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에 관한 사항
5. 규정에 따라 유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6. 그 밖에 윤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의 법률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그야말로 막강하다.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제기되는 수많은 윤리적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최상의 윤리위원회라고 할 만큼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큰 위원회라는 점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기대한 한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위원과 과학계위원이 전체 위원회의 2/3를 차지함으로써 그 숫자만으로도 위원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sup>11)</sup> 현재의 위원회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안전판 역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위원회의 기능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률의 내용들은 사실상 윤리 문제에 관한 역할을 기대하는 내용이지 생명과학의 내용에 대한 인허가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윤리 문제는 안전의 문제도 당연히 포함하며, 생명과학자들의 연구가 진정한 의미에

10) 위원회가 운영체척 제 2조의 요구처럼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가 전적으로 정부 위원들의 회의 참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원회의 활동 첫 2년 동안의 내용이 주로 황우석 박사의 연구 윤리 조사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회의가 부정적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크다. 그러나 정부위원의 불성실한 회의 참석과 대리참석은 회의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11)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림대 법학부의 이인영 교수는 2006년 1월 24일 『한국생명윤리학회』에서 개최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개선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정부 장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를 이미 제기하고 있다. 이인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방안, 『생명윤리』 2006 ; 7(1) : 73-74.

서 인류에게 봉사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시각은 한 국가의 법률이 지향하고 있는 정신이어야 할 것이며, 위원회의 기능도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는 기능으로 제시되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상식에서 위원회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따라서 위원회는 생명윤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들여다볼 때, 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생명윤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윤리와 안전에 있어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다음의 <표 2>는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간 위원들의 전문 분야이다.

생명윤리학 분야가 그 어느 학문보다도 학제간 연구

<표 2> 위원명단

<윤리계 위원>

성 명	현직 및 전문분야
양삼승*	법학박사,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98~현재)
김환석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과학기술사회학 박사
명진숙	전 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여성학 전공
이동익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신학박사
이인영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부(법학) 교수, 법학박사
황상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생리학 박사
정규원**	한양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의학박사, 법학박사

\* 황우석 박사의 연구 윤리 문제와 관련되어 2006년 1월에 위원 사퇴.

\*\*황우석 박사의 연구 윤리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황우석 박사의 연구 윤리를 조사하는 동안 위원회 활동 제외

<과학계 위원>

성 명	현직 및 전문분야
김두식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교수, 생화학박사
신상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약학박사
양운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 의학박사
이정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학박사
조한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학박사
하권의	청담 우리들병원 명예원장, 의학박사
한동관	관동대학교 총장, 의학박사

가 활발한 분야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들은 생명윤리학 분야의 학자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을 만큼 충분한 연구와 활동을 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생명윤리의 기초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윤리학이나 철학 분야에서의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위원회라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실제로 황우석 연구의 윤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sup>12)</sup>

3) 위원과 심의 연구와의 관련성 문제

‘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은 “기관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 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 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법률 규정이며, 사실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기관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연구들에 대

12) 황우석 연구의 논문 조작 사건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문화방송의 PD 수첩 프로그램 방송(2005년 11월 27일) 이후 서울대학교는 황 교수 연구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위하여 신속히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2006년 1월 10일에 「황우석 교수 연구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 놓았지만, 정작 이 문제에 대한 윤리 의혹 조사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황우석 사건이 국민들에게 거의 잊혀져갈 즈음인 2006년 11월 23일에 「황우석 연구의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2월 2일에 중간보고서로 작성되었지만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 등의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위원들의 주장이 엇갈려 결국 2006년 9월 28일에 이르러서야 서면의결 방식으로 의결이 완료되었고, 위원회의 공식입장으로 11월 23일에 발표된 것이다.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10권 2호(통권 제18호) : 2007년 12월

해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그 연구 결과에 대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연구에 대한 심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적 조치는 기관윤리위원회의 공정성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질 때 기관윤리위원회는 연구, 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있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를 감독하던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이 이러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고, 일부 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실명까지 거

론하면서 기관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불법성을 보도하기도 하였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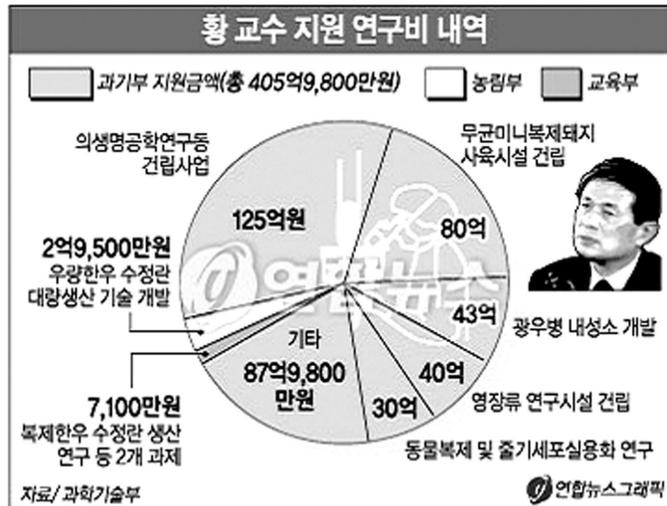
그런데 기관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법률 요건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위원회가 황우석 박사의 연구 윤리 문제를 심의하는 동안 황 박사의 연구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위원들이 위원직을 사퇴하거나 한시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있었다.<sup>14)</sup>

문제는 정부 위원이다. 정부가 이미 황 박사의 연구를 지지하고, 수많은 연구비를 지출하고 있다면 황 박사의

〈그림 1〉

과학기술부 발표

황우석 지원 연구비 내역



- 13) 동아닷컴은 2005년 12월 22일 보도를 통해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의 위원들 중 외부위원 4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김제연 목사 :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장애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황 박사로부터 "아들을 걷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아들의 체세포를 줄기세포 연구용으로 제공. 정규원 교수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으로도 위촉된 정 교수는 황 박사의 2005년도 「사이언스」 논문에서 윤리 관련 자문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희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 2005년 7월부터 황 박사 팀에 개인자격으로 참여해 생명윤리와 관련한 자문과 기자회견 작성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dongA.com, 2005년 12월 22일.
- 14)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양삼승 위원은 황우석 박사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2005년 11월 23일 황 박사 측과 접촉을 갖는 등 기자회견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것이 밝혀져 위원을 사퇴하게 되었고, 또한 정규원 위원은 황우석 박사의 2005년도 줄기세포 연구 계획의 심의를 담당했던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것과 2005년 11월 생명윤리전문 국제학술지인 미국생명윤리학회지에 미국 케이스웨스턴대 현인수 교수와 공동으로 「줄기세포 연구에서 난자와 체세포 획득」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 황 박사 팀의 2005년도 사이언스에 발표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연구는 난자 제공 등에서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치켜세웠다. 이러한 점이 황 박사의 연구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는 황 박사 연구 윤리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정규원 교수의 위원회 불참을 조치하였다(2005년 12월 14일 서면의결).

연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정부 부처들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위원직을 사퇴한 양삼승 위원이나 회의 참석 불가로 결정된 정규원 위원처럼 위원회에 계속 참여할 윤리적 근거는 상실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을 들추어내지 않더라도 황우석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은 정부가 특정 과학자나 특정 분야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해 왔다는 것이며, 그것도 모자라 국가의 법률이라는 구조를 통해 그 지지에 대해 아예 썩기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정부 위원이 참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

## 2. 회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운영세칙 제2조)”. 위원회의 ‘운영세칙’에서 회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공식회의는 2005년 위원회의 임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7회에 지나지 않는다.<sup>15)</sup> 필자가 이렇게 단 7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부 위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공식 상정된 의제를 다룬 회의가 이 뿐이라는 의미이지, 그밖에 ‘간담회’라는 형식의 회의 12번을 더하면 모두 19회의 회의가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간담회’라는 형식의 회의는 위원회의 운영세칙이 규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의미의 회의는 아니었던 것 같다. 정식 의결이 필요한 내용들을 토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위원들이 모든 회의에 참석할 만큼 한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리인이나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논의한 다음, 논의된 내용들이 공식회의에 상정되면 이때 정부 위원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을 참석시켜 의결하는 형식이 우리 위원회가 취한 회의 방법이다.

여기서는 위원회가 방법으로 선택한 간담회 형식의 회의와 공식회의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 1) 간담회와 공식회의

위원회 위촉식 이후 첫 번째 회의가 공고롭게도 당시 위원장이었던 양삼승 위원의 요청으로 개최된 민간위원 중심의 간담회였고, 이후 정부 위원들이 참석치 않은 회의는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간담회에서 논의 사항들은 제시되었지만 정식 의제나 의결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대부분의 경우 정식 의제로 상정될 내용은 간담회에서 민간 위원들과 관계 부처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되었고, 논의 되었거나 혹은 논의를 거친 내용들은 공식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상정되어 정부 위원들(법적 대리인 포함)과 함께 심의, 의결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위원회’의 특징이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시키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그 의미를 둔다고 하면, 이러한 형태의 회의 방법도 매우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의가 없다. 그러나 간담회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회의에 신뢰를 둘 수 없었던 것은 간담회 자체가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는 구조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원회에서 경험했던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본다.

#### a. 운영 세칙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2005년 7월 8일, 3차 간담회는 위원회의 운영세칙안을 논의하는 회의였다. 운영세칙안은 회의의 횟수, 의결 방법, 대리출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신뢰를 가늠할 수 있는 운영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규정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보다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간담회가 소집되

15) 공식회의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들이 참석하고, 정식 안건 - 의결 안건, 심의 안건 및 보고 안건 - 이 상정된 회의를 의미한다. 운영세칙은 회의 정족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개 정부 위원들은 공식 회의가 아닌 경우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10권 2호(통권 제18호) : 2007년 12월

었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1주일 후 개최된 공식 회의에 상정되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sup>16)</sup>

이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은 민간위원 7명뿐이었고, 그 외에 몇몇 공무원이 함께 자리를 했었다. 전체 위원 21명 중 1/3에 지나지 않는 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올바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을 것이다.

논의된 운영세칙안에는 '서면의결'과 '대리참석'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에 큰 장애로 드러나게 된다.

### 제7조(서면의결)

-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안건, 또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서면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서면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이 경우 도달한 서면 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서면의결서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즉시 위원들에게 알리고, 차기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참석) 법률 제7조 제3항 제1호의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 소속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된 서면의결 방법은 결국 2006년 '체세포

복제배아연구 재평가 결과 심의'에 대한 의결까지도 서면의결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내부에 상당한 잡음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서면의결 허용에 관한 재논의 끝에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면의결을 전면 금지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 서면의결을 허용하도록 하였다.<sup>17)</sup>

대리참석의 문제는 앞서서도 이미 언급하였지만 모두 7차례의 공식회의에서 참석해야 할 정부 위원들의 수를 단순 계산하면, 49명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7회×7명) 28명이 대리참석을 하였고, 6명은 아예 불참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석 간사의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면, 대리참석자를 보내지 않고 직접 회의에 참석한 정부위원은 극소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sup>18)</sup>

### b. 무책임한 간담회

2006년 4월 21일 간담회에서는 '황우석교수 연구의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보고서 심의'가 있었다. 위원회는 MBC에서 '황우석 신화, 난자의혹'이라는 제목의 PD수첩이 방영된 직후 2005년 11월 29일 간담회를 열고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윤리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조사를 위해 위원회는 2005년 11월 29일부터 2006년 2월 2일까지 소위원회 6회,<sup>19)</sup> 간담회 5회가 개최되어, 황우석 교수 연구의 윤리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윤리적, 법적 판단을 위해 노력했다.<sup>20)</sup> 이러한 노력 끝에 같은 해 4월 21일 간담회에 「황우석 교수 연구의 윤리문제에 대한 최종보고서(초안)」이 제출되었고, 초안은 간담회에서 대체적으로 수용되면서 6월 16일 정부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식회의에 상정되었다.

16) 2005년 7월 15일 제1차 회의록 4쪽.

17) 2007년 3월 23일 회의록 참조.

18) 1, 1) 대리참석 참조.

19) 3인 소위원회는 이인영, 조한익, 황상익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 15일 이후에는 신상구 위원이 참여하는 4인 소위원회로 운영되었다.

20) 「황우석 교수 연구의 윤리 문제에 대한 중간보고서」 2006년 2월 2일, 1쪽 참조.

상정된 초안은 황우석 연구의 윤리 문제에 청와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등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책임있는 규명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9월 25일에 확정된 최종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 정부위원이 함께 자리하는 공식회의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sup>21)</sup> 실제로 회의 중 정부 위원들은 공식적인 보고서에 ‘청와대’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으며, 결국 최종 결론에는 그들의 원의대로 ‘청와대’라는 문구는 빠지게 된 것이다.

간담회의 ‘무책임’과 관련하여 하나 더 소개할 것이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위원회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한 윤리적·법적 판단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로 위원회는 「황우석 연구의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보고서」에서 “황우석 연구는 계획서 수립 및 연구 수행 과정 전반에서 윤리적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였다. 어떠한 경우이더라도 한 나라의 과학 연구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확고한 엄격성을 유지하며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sup>22)</sup>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언론과 정부기관 그리고 본 위원회의 책임도 크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

론에서 위원회가 무엇보다도 “과학연구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검증되어야 하고, 일반 국민과 과학자 간의 의사소통에서 연구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sup>23)</sup>는 점을 크게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기까지의 심의는 주로 간담회와 소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총체적인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난자 수급 과정에서의 윤리 문제들뿐만 아니라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자체도 정확한 과학적 지식의 바탕도 없이 성급히 진행됨으로써 결국 논문 조작을 통해 온 세계와 국민을 기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 윤리 문제를 심의하던 간담회의 과정에서 민간위원 대부분은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심각한 윤리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검증도 되어있지 않다는 인식에 접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이 연구도 앞으로 동물 연구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나마 중단되어야 할 것이고, 추후 개정될 법률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간담회의 대체적인 분위기였던 것이다.<sup>24)</sup>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하고 만다. 11월 23일 황우석 박사의 연구 윤리 문제가 발표되던 날,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또한 매우 큰 생명 윤리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평가한

21) 6월 16일 상정된 초안에서 볼 수 있는 문장과 9월 25일의 최종 결론의 문장을 비교해 볼만하다. 초안에서는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소, 왜곡에 일조한 것은 국가 기관과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로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최종결론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정부는 생명과학기술의 개발·이용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사건 초기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

22) 「황우석 연구의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보고서」 결론, 2006년 11월 23일.

23) 앞의 글.

24) 모든 의학연구에서 동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헬싱키선언」은 모든 의학연구의 기본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인체를 이용한 의학 연구는 일반적으로 공인된 과학적 원칙에 따라야 하고, 과학 문헌과 그 외 관련된 정보를 통한 충분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적절한 실험실적, 그리고 가능한 경우 동물 실험 결과가 근거가 되어야 한다(11항).” 그리고 「뉘른베르크 강령」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실험은 동물 실험의 결과에 맞춰 짜여 지고 기반 지어져야 하며 질병의 자연적 역사 혹은 연구 중인 다른 문제들에 관련된 결과들이 실험의 실행을 정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3항).”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10권 2호(통권 제18호) : 2007년 12월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의 제한적 허용 문제’에 대한 의결이 시도되었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해 12월 10일, 서면의결 되고 다음해 3월 23일 공포되었다. 이 의결은 윤리계 위원 전원은 의결 자체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가운데 전체위원 20명(위원장 공식) 중 1명 기권, 12명으로 통과된 것이다. 결국 이 의결은 정부위원이 주도한 것이고, ‘간담회’라는 회의는 어떠한 책임도 없는 걸치레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sup>25)</sup>

### 3. 서면의결 문제

위원회의 운영세칙 제 2조에 의해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회의는 2005년 4월 7일 위원회 출범 이후 간담회 12회, 공식회의 7회가 열렸으며, 이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의결이 이루어졌다.<sup>26)</sup>

아래 <표 3>을 통해 위원회의 의결 12건 중 5건이 서면의결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세칙은 서면의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위원회는

<표 3> 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의결일시	의결사항	의결방법	참석위원수		
			민간위원	정부위원	대리참석
2005. 7. 15.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표결없이 의결	12(14)	3(7)	3
2005. 7. 15.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호선	표결없이 의결			
2005. 8. 5.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 확인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서	합헌 서면의결			
2005.12.14.	정규원 위원 위원회 참석여부	불참 서면의결			
2005.10.10.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료,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의 전문위원회회부	표결없이 의결	13(14)	3(7)	3
2005.10.10.	금지,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지침 마련 전문위원회 회부	표결없이 의결			
2006. 2.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개선 방안	표결없이 일부 수정의결	11(12)	1(7)	6
2006. 2. 2.	치매, 비만 유전자검사 금지, 제한 지침 의결	표결없이 의결			
2006. 9. 28.	황우석 연구의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최종보고서	서면의결			
2006.11.23.	법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의 관리방안 의결	표결없이 의결	8(12)	1(7)	3
2006.12.10.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재평가 결과심의	서면의결			
2007. 1. 10.	유전자 검사 지침안	서면의결			

\* 참석위원수에서 ( )의 숫자는 전체 위원을 표시한 것이다.

25) ‘윤리계 위원들은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에 대한 허용 혹은 금지의 문제에 있어 그동안 황 박사 연구의 생명윤리 문제를 심의하면서 ‘한시적 금지’ - 동물 연구 등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잔여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대체 연구 방법으로 제시 - 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위원회에서의 심의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결에만 참여한 정부위원들로 인해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만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다.

26) 의결은 주로 공식회의와 서면의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표 3>에 소개하고 있는 의결 방법과 결과는 국가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회의록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안건, 또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위원이 서면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운영세칙 7조 1항).

운영세칙이 요구하는 서면의결의 조건은 첫째,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안건, 둘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표 3>의 서면의결 5건 중에서 이러한 조건을 채우는 내용이 과연 몇 건이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지 아닐 수 없다.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경미한 내용이거나 긴급한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의결의 방식이 남용되었다는 의미이다.

서면의결이 이렇게 남용된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공식회의가 잘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간 중 공식회의는 2005년에 2회, 2006년에 3회 2007년에 2회 밖에 열리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서면의결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의결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면의결을 시도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심의는 주로 간담회에서, 그리고 의결은 공식회의에서 이루어지는데 위 <표 3>에서 드러나

듯이 공식회의에 정부위원의 참석은 드물고, 결국 공식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

한 예로 2006년 11월 23일 회의에서는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재평가에 관한 결과 심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대리출석까지 합쳐서 불과 12명에 지나지 않았다.<sup>27)</sup>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허용과 관련된 심의야말로 위원회가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서는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허용 여부에 대한 제한적 허용과 한시적 금지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보고 후에 간단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 심의다운 심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위원장은 의결을 시도했고, 이에 모든 윤리계 위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서면의결의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다.<sup>28)</sup>

끝으로 서면의결이 이루어진 안건들 중에는 운영세칙이 언급하고 있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서면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서면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위원회의 태만 때문에 손쉬운 방법인 서면의결을 택한 것이라고 해야 더 옳을 것이다.

국가의 기관으로서의 위원회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충분한 토의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위원회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

27)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 7명의 위원들 중에서 대리출석을 제외하면 위원의 수는 9명만 참석하였다

28)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서면의결결과 보고서(2007년 3월 23일)에 따르면 위원회는 11월 23일 회의에서 회의에 불참한 위원들의 의견까지 함께 듣고자, 합의 하에 서면의결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쓰고 있다. 합의라는 용어가 거슬리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논의되기도 되지 않은 중대한 내용을 몇 명 안 되는 위원들(대리참석위원까지 포함하여)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될 때, 충분히 심의한다는 의미에서의 위원회의 특성을 저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서면의결이라는 방법이 제시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의미는 더욱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했다. 11월 23일 회의 이후 위원장(대리)는 11월 29일 재평가 안건을 서면의결에 붙였고, 이에 윤리계 위원 전원은 위원장(대리)에게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재평가 심의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12월 5일). 이 의견서에서 윤리계 위원 전원은 체세포 복제배아연구 재평가에 대한 서면의결 방식을 반대하며,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위원장(대리)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회신(12월 6일)하였고, 서면의결 기한을 12월 10일까지 연장하면서 2007년 1월 19일 민간위원들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원장(대리)는 간담회 개최와는 별도로 서면의결을 감행하였고, 이에 강력히 반발한 윤리계 위원 전원이 서면의결을 거부하는 가운데 결국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제한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서면의결이 이루어진 것이다(전체 20명의 위원들 중에서 찬성 12, 기권 1).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10권 2호(통권 제18호) : 2007년 12월

에서 서면의결 방식은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의결방식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예외적인 방식으로서의 서면의결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인식하면서 위원회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또 앞으로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 II. 결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주로 회의와 의결에 관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회의와 의결의 문제는 위원회의 구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위원회에서는 위원 구성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논의하였고, 급기야는 2007년 5월에 입법 예고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전부 개정안」에서는 정부위원 2명(보건복지부 장관, 과학기술부장관)과 민간위원 18명으로 대폭 변경된 것이다. 이러한 변경은 위원회의 효율적이고도 신뢰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가장 절실한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이지만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안은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6명으로 조정되고 말았다. 정부위원으로서 “우리가 왜 빠져야 하느냐?”, “우리 부서만큼 관련이 있는 부서가 어디 있느냐?”는 등의 이유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식의 밥그릇 싸움이 결국은 위원회의 운영의 결과로 내놓은 합리적인 방안을 여지없이 짓누르고만 격이 되고 말았다.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의결에만 참여하여 정부 정책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식의 위원회 참여라면 위원회는 한낱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에만 머물고 말 것이다.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해서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제기된 문제점 때문에 무엇

보다도 정기회의를 정례화하자는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 2007년 1월 19일 간담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었고, 운영 세칙에 명시된 것처럼 최소한 분기 1회의 정기회의와 수시로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렇지만 이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논의 이후 단 1회의 정기회의가 있었을 뿐이고, 간담회도 불과 2차례밖에 더 열리지 않았다. 정기회의가 있더라도 정부위원이 잘 참석하지 않거나 혹은 대리출석이 주를 이룬다고 할 때, 심도 깊은 심의가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며 의결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정부위원이 대리출석을 시키지 않고 잘 참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지 않겠는가. 결국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부위원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의 정책과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의결권 없는 참관자 혹은 보고자로서 참석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서면의결의 폐단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2007년 3월 23일 회의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지금까지의 회의 운영에 있어서 서면의결 제도가 안고 있는 불합리성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으며, 서면의결 방식을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으로 접근하다가 중국에는 극히 예외적인 방법으로, 중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긴급한 경우에만 국한하여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식을 남겨 두기로 한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이나 회의, 의결 문제는 위원회 운영의 핵심 내용이다. 곧 효율적이고 법률의 의도에 부합하는 위원회의 보다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는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들에 대해 큰 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다. 위원회의 기능이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 생명윤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신뢰성 있는 활동과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정책이나 과학계의 생명과학 연구를 보필하거나 지지하는 기구가 아니고, 오히려 감시하는 기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에서처럼 위원회의 위원도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 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고도 상식적인 측면들이 존중되면서 위원회가 운영될 때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기본 정신이 충분하게 살아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위원회의 상시적 운영이라고 생각하며, 이 위원회의 권한

으로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사 및 감독, 심의 권한이 부여되는 위원회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한 것은 이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내부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의 재고를 위한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가동되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가위원회로 탈바꿈하리라 기대해 본다. **ME**

**색인어 :** 생명윤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윤리위원회, 기관윤리위원회, 서면의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Lessons from the Operations of the Korean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LEE Dong-Ik\*

On December 29, 2003,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Bioethics and Biosafety Act*, which came into effect in 2005. While many organizations - governmental, scientific, civic, ethical, and religious - participated in the public discussions leading up to the enactment of the *Bioethics and Biosafety Act*, none of these organizations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 once it was enacted. Many criticisms were raised, including criticisms of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which was established to enable all interested parties to voice their concerns concerning the bioethics legislation,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mong the various parties, and to ensure that the pending legislation would be ethically sound. However, for reasons presented in this article, the Committee did not, and could not, fulfill its proper role of mediating disagreements and promoting consensus; instead, it enabled each of the various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he *Bioethics and Biosafety Act* to claim their own interests. The function of a committee is very much determined by its composition. So to understand why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failed to function properly, one must look to its composition or organization.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was organized, describes its agendas and operational problems during a two-and-a-half year period, and presents a proposal for resolving those problems.

**Keywords:** Bioethics, Korean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Ethics committee, IRB, Committee

---

\*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Medical College of Catholic University